1 2011.9.19 제148章 Weekly

이슈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포커스

국내 자연재해리스크 관리 현황과 시사점

금융보험 해설

중국 금융시장(1): 발전 역사 및 현황

국내금융 뉴스

금감원, 보험 및 여·수신 관련 제도 개선 물가불안과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오바마 대통령, 4,0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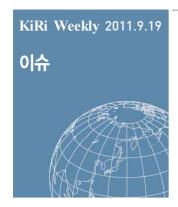
유럽 _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증대

일본 _ 일본 금융청, 지진피해 지방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 결정

중국 $_$ 중국 제조업 경쟁우위 하락 논란

금융시장 주요지표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보험살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인데다 범행이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와 다르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물질만능 및 인명경시 풍조가 극명하게 드러남.
- 우리나라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요구함.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보험계약 무효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인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함
 - 그동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및 위조는 보험회사의 면책 측면에서 거론되었을 뿐 보험회사의 피 보험자 보호책임 측면에서 논의된 적이 없음
-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첫째, 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수익자가 타인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질 것을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하며, 이에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둘째, 계약자 및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
 - 셋째, 살해위험을 느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피보험자 살해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수익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계약 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인명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보수적인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을 적용하며, 신중하지 못한 언더라이팅 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보험살인의 적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험살인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보험살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고 범행이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와 다르며, 우리사회의 물질만능 및 인명경시 풍조를 극명하게 드러내 는 것임.
 - 2006년 보험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사망보험금의 약 14%가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함.
 - FY2010 기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 보유계약건수는 약 5,500만 건, 보유보험가입금액은 약 1,793조 원에 달함.
- 이처럼 사망보험을 매개로 하는 사기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사망보험의 보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의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보험계약의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관계 또는 재산적 이익의 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타인(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및 위조 등 계약서상의 흠결은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일 뿐 보험회사 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님.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사망보험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을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의 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보호 장치를 검토하며, 이를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2. 사망보험의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 피보험이익과 동의

가. 사망보험의 계약구조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기 및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으로 구분됨.
 -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은 수익자가 누구이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망보험계약임.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음.
- - 대법원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즉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을 가장한 보험계약에 대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대법2009다74007).

〈표 1〉 우리나라 사망보험의 계약구조

구분		관계	비고	
자기의 사망보험계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자≠수익자	다만,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함(2009다74007판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계약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자=수익자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계약성립의 요건 (「상법」제731조제1항) • 피보험이익 요건 없음	
	계약2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자#수익자		

나. 피보험이익1)

-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 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정의됨.
 - 우리나라「상법」내 손해보험 통칙편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하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한다고 규정함.
- □ 「대륙법」은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계약의 필수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영미법」은 피보험이익을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함.
 - 「대륙법」의 통설에 따르면 손해보험은 손실보상계약이므로 보험계약의 목적으로서 피보험이익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생명보험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금전급여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반면「영미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는 견해가 통설의 지위에 있음.
- 구체적으로 「영미법」의 이익주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식임.
 -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관계와 혈연이나 인척에 의한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이 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조기 사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고 봄.
 - 재산적 이익관계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망, 기업은 해당 기업 핵심임원의 사망, 그리고 피고용인은 그 고용기간 동안 받을 급여액을 한도로 고용주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인정함
 - 한편,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계약체결의 성립요건이지 계약존속을 위한 요건
 은 아니므로 수익자를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님.
 - 즉,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시 존재해야 하나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됨.
 - 이익주의의 경우 생명보험의 영역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음.

¹⁾ 피보험이익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함.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연구」, 한국기업법학회(2010); 김성문(2010), 「피보험이익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 반면, 「대륙법」의 동의주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제 방식임.
 -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은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계약 체결의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우리나라「상법」도 제731조에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는 동의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동의주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운용상에 서도 동의제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 우리나라 사망보험계약은 피보험자와 계약자 및 수익자 간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계약 성립 및 존속의 요건으로 함.
 -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침.

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설계사가 대필한 자기의 보험계약은 무권대리 행위
 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효력은 추후 본인의 추인 여부에 달려 있음.
 - 예를 들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에도 계약을 유지했다면 이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추인행위에 더해 보다 명시적인 추인 행위로 볼 수 있음.
 - 「민법」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 반면,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까지 반드시 그 타인(피보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자필서명의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2004다56677).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사후 추인과 함께 수 년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 「상법」제731조제1항은 「민법」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음.
- 답한 다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2007다 30263).
 - 동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 의무를 부담함.
 -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도 가입 전 청약서 및 약관을 검토해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을 사전에 미리 알아볼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해 40% 보험금 감액을 판시함.
 - 2009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과실을 7:3으로 인정한 바 있음(조정번호 제2009-17호).

3. 미국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보호 장치



- 미국은 사망보험 체결과 관련하여 인명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계약 성립요건을 두고 있으며, 신중하지 못한 언더라이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에 묻고 있음.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관계와 혈연이나 인척에 의한 가족관계로 구분함.

²⁾ Liberty National Life Insurance v. Weldon(Ala. 1957), 상세는 〈표 2〉를 참조함.

-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州)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친족관계라는 이유
 만으로 상대의 생명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님.
- 보험회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여 피보험자가 보험 살인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둘째, 계약자 및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수준의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3)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인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계약 성립의 필수요건임.
 - 다만,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뉴욕은 14.5세) 자필서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뉴욕주를 비롯하여 일부 주(州)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도 자필서명을 요구하지 않음.⁴)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위조된 보험청약을 승낙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할 의무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에 앞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5)
-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피보험자 살해 시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제외한 피보험 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³⁾ Ramey v. Carolina Life Ins. Co. (SC. 1964). 상세는 〈표 2〉를 참조함.

⁴⁾ N.Y. Insurance Law 3205(c)(1).

⁵⁾ Life Insurance Company of Georgia v. Lopez(Fla. 1983). 상세는 〈표 2〉를 참조함.

⁶⁾ Life Insurance Company of Georgia v. Lopez(Fla. 1983), 상세는 〈표 2〉를 참조함.

〈표 2〉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판례

구분	보험계약내용	소 제기	법원의 판단
Liberty National Life Insurance v. Weldon (Ala. 1957)	피보험자는 부모와 동거 중인 2.5세의 여아이며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숙모 피보험자의 부모는 피보험자가 살해되고 난 후계약사실을 인지함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숙모는 피보험자를 살해한 후보험금을 수령함 구형함 기보험자는 무료한 기보험자를 가 보험 기관	피보험자의 부모는 피보험이 의 존재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부주 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됨으 로써 피보험자가 살해되었 다고 주장함	• 보험회사가 계약자 및 수익 자의 피보험이익 존재 유무 를 신중히 검토하여 보험계약 을 거절하였다면 피보험자가 살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이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함
Ramey v. Carolina Life Ins. Co. (SC. 1964)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인 부인이 피보험자인 남편의자필서명을 위조하여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는 동계약사실을모름 보험금수령을목적으로 남편을독살하려고하였으나실패함 	• 피보험자는 부인의 독살 시도 와 그로 인한 자신의 부상 에 보험회사에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함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의 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 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리 적인 수준의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
Life insurance company of Georgia v. Lopez (Fla. 1983)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인 부인이 사망보험계약을 건강 보험계약으로 속여 남편의 자필서명을 받아냄 연평균가구소득은 9,000달러 인데 반해, 연납부보험료는 7,464달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대리 인에게 부인과 처남의 살해음 모를 알렸으나 보험회사는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시 부주의와 피보험자 의 위험통보 시 부주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 또는 피보험자의 신고 시 ① 보험금총액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고, ② 가구소득에 비해 납부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으며, ③ 계약자가고액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지불할 수입이 없음에따라 피보험자의 동의 부족(lack of consent)을 파악할 수 있을만한 조사를 실시했어야함 살해위험을 느낀 피보험자의보험계약 취소 요청이 있을경우,보험회사는계약을 무효로하거나 피보험자 실해 시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수익자에게 경고할의무가있음

- 보험사고가 계약자 및 수익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유효한 사망보험계약인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살인의 위험이 있는 계약체결을 기피하도록 함.
 - 유효한 사망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살인의 가능성이 잠재된 계약 을 알면서도 승낙할 유인을 가짐.⁷⁾
- 다만, 사망보험계약이 애초부터 계약자 및 수익자의 사기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자 및 수익자의 피보험자 살해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8)

4. 결론 및 시사점



- 보험회사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명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가계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거 또는 경감함으로써 가계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망보험에 대해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청약의 승낙에 앞서 피보험이익 요건충족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일부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는 자발적으로 사망보험의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보험이익 요건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익자를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 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⁷⁾ Life Insurance Company of Georgia v. Lopez(Fla. 1983).

⁸⁾ Ingram John D. (2003), "An Insurer's Duty to Investigate," FSU Business Review, Vol. 3.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또는 위조와 같은 계약서상의 흠결을 인수심사시점이 아닌 보험금 지급시점에 가서야 문제 삼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불신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
- 나아가 보험회사는 실제 피보험자에 의해 자필서명이 이뤄졌더라도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후 자필서명을 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kiqi

〈표 3〉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보호 장치 비교

미국	우리나라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수 없음	의 그림이 다이 문제에서 많이고 제구를 제골를 구 있다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보험금	좌동	
수령 가능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확인할 필요가 없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함(예외 있음)	좌동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누락 또는 위조된 계약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누락 또는 위조된 계약은 무효	
인해 피보험자가 보험살인의 위험에 처한 경우 보험	이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살해위험을 느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피보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해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 살해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수익자에게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함	
경고할 의무가 있음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계약자 및 수익자에 의한 보험살인이 명백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